

'25년 안전상생 수준별 지원프로그램 대상기업 공모(제조업)

1

사업 목적

- 안전상생 수준별 지원프로그램을 통하여 중·소규모 사업장의 안전보건 관리역량을 단계별로 향상시켜, 고위험 중심(SIF) 위험성평가와 중대재해 예방중심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자율적으로 운영·개선하도록 컨설팅 및 작업환경 개선을 지원하여 안전일터 조성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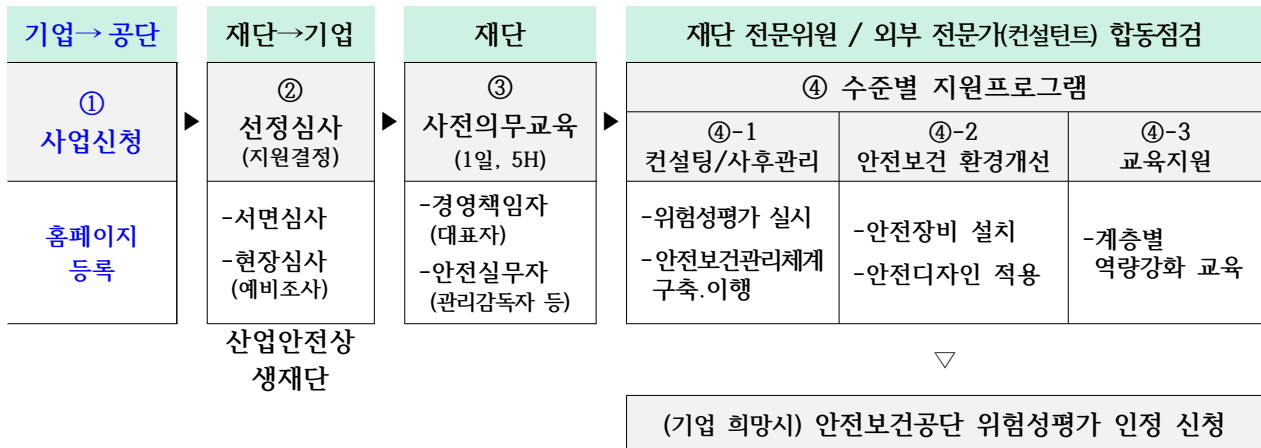
2

사업 개요

- 사업주관 : 산업안전상생재단, 한국산업단지공단
 ※ 재단 지원사업은 무상지원 원칙이며, 컨설팅 결과는 재단 외에 비공개 됩니다. 또한, 산업안전·보건에 대하여 고용부에 행정 조치를 의뢰하거나 신고하지 않습니다.
- 지원대상
 - 국내 자동차부품 제조업·철강업 등 상시 근로자수 100인 미만 사업장 또는 중소기업기본법 상 매출액 기준 중소기업 사업장(중기법 시행령 별표1,3 해당)
- 사업규모 : 산단공 관할산단 입주기업 10개소(기업당 3년간 최대 5,000만원 상당 지원)
- 추진방향

중대재해 취약사업장에 위험성평가 중점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을 실시하고, 진단결과 유해·위험요인 개선을 위해 스마트 안전장비 설치 및 안전디자인 적용, 맞춤형 안전교육 등 효율적인 개선방안을 제공하여 산업재해를 예방
- 지원 내용

안전상생 수준별 지원프로그램		세 부 내 용
안전관리체계 구축 컨설팅	위험성평가	• 사업장 유해위험 기계기구·공정에 대한 위험성평가 진행 • 위험성 감소대책 제시 및 개선지원, 조치현황 추적관리
	안전보건관리체계	• 중대재해 예방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지원 • 작업장 안전보건관리 수준 향상을 위한 현장지도
작업장 안전보건 환경개선 지원 ※ 위험성평가 결과, 사업장 참여도에 따라 지원범위 결정	스마트 안전장비 설치 지원	• 위험성평가 결과에 따라 AI기반 스마트 안전장비, 방호장치 설치 지원 -지게차 충돌방지시스템(4ch 카메라, 라인빔), 크레인 고보라이트 등
	안전디자인 지원	• 3정 5S 기반 사업장 특성을 반영한 안전디자인 적용 지원 -사업장 내·외부 이동동선, 안전·보건표지, 비상대피로 등
교육 지원	사업장 맞춤형 안전보건교육 지원	• 전문인력 양성 및 자질 향상을 위한 전문화 교육 -안전보건관리체계 및 경영시스템, 위험성평가 등
정보 지원	안전·보건정보 및 자료 지원	•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매뉴얼 제공 • 안전관련 법령 및 정책자료 발간(뉴스레터/월 2회)



③ 선정심사

- 재단 평가위원회가 기업 제출서류 등 서면심사 실시하여 고위험 우선순위 사업장 구분하고, 현장심사(예비조사) 실시하여 지원기업 최종 선정

※ 안전·보건/소방분야 안전수준진단 지원사업장은 현장심사 절차 생략 가능

⑤-1 컨설팅/사후관리

- 재단 전문위원과 외부 전문가(컨설턴트)가 합동점검 실시하며, 기업 안전상생수준 단계에 따라 방문횟수를 조정하여 다회성 지속관리

안전상생수준 단계	기본 지원횟수	핵심과업
1단계 [Initial]	사전의무교육(집체교육)	경영책임자, 안전실무자 역량강화 교육
2단계 [Standard]	4회(3일 위험성평가+1일 확인점검)	위험성평가 실시지원(최초/정기)
3단계 [Professional]	3회(2주 이상 간격 방문)	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
4단계 [Final]		안전보건관리체계 고도화(정착 지원)

※ 방문횟수.주기는 기본 지원횟수를 원칙으로 기업 요청 및 업무 진행도에 따라 탄력적 운영

- 사업신청 당해연도에는 안전상생 3단계 달성을 목표로 컨설팅 추진하며, 컨설팅 종료 후에도 총 3년의 기간(컨설팅 기간 포함) 동안 사후관리를 통해 기업에서 자율적 안전보건관리체계가 정착될 수 있도록 밀착지원
- 단계별 사업수행 세부절차는 [붙임1] 참조

■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

- 신청기간 : '25.9.16 ~ 9.30

- 신청방법 : 신청서(양식) 제출 *접수처 : vv5688@kicox.or.kr

*접수기업은 기업POOL에 등록되어 고위험 우선순위로 순차적 지원(경우에 따라 익년도 지원)

■ 제출서류

- ① 안전상생 수준별 지원프로그램 신청서(홈페이지 입력 / 개인정보 제공.조회 동의서 포함)
 - ② 기업 소개자료(조직도 포함 / 양식 자유)
 - ③ 사업자등록증 사본
 - ④ 재해율 확인서(안전보건공단 발급)
 - ⑤ 중소기업.소상공인 확인서(중소벤처24 발급)
 - ⑥ (해당시)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서 사본(ISO45001 또는 KOSHA-MS)
- ※ 첨부서류 누락시 선정 제외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필히 첨부요망

5

선정심사

■ 심사방법 및 기간

- (1차)서면심사 → (2차)현장심사(예비조사) → 재단 평가위원회 종합평가 → 지원기업 결정

※ 심사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

■ 선정 결과발표 : 기업 담당자에 개별 통보(유선, 메일)

■ 선정기준

1) 서면심사

평가지표	평가기준	우선선정 기준
1. 사업장 규모	① 상시 근로자수	50인 미만 > 100인 미만
	② 매출액(중기법 시행령 별표3 기준)	소기업 > 중기업
2. 산업재해 발생현황 (최근 4년, '22~'25년)	③ 재해발생 사업장	중대재해 포함 건수
	④ 재해율이 동종업종 규모별 평균재해율보다 높은 사업장	평균 이상 > 평균 미만
3. 사고다발 위험설비 보유현황 (제조업 사망사고 기인물)	⑤ 주요 기인물* 보유 사업장 * 크레인 / 지게차 / 컨베이어	기인물 보유시
	⑥ 그 외 기인물* 보유 사업장 * 사다리 / 화물운반트럭 / 배합.혼합기 / 분쇄.파쇄기 / 산업용로봇 등	
4. 사고다발 위험업종 해당현황 ('22~'24년 사망사고 다발 제조업종)	⑦ 사고다발 7대 업종* * 금속제련업, 수제품 및 기타제품 제조업, 기계기구.금속.비금속광물제품 제조업, 선박건조 및 수리업, 목재 및 종이제품 제조업, 화학 및 고무제품 제조업, 섬유 및 섬유제품 제조업	업종 해당시
5. 안전보건관리체계 운영도	⑧ ISO45001 / KOSHA-MS 인증 (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여부)	미인증 > 인증
6. 안전.보건 등 관련 지원사업 중복현황	⑨ 안전보건공단 컨설팅 등 유사사업 진행 (사업, 지원금액 별도 확인)	미진행 > 사업중복

2) 현장심사(예비조사)

평가지표	평가기준
1. 사업주 의지 (적극성)	본 사업의 이해도, 사업 협조의지(컨설팅 대응시간 확보, 담당자 배정 등)
	사업을 통해 명확한 개선점이 있고, 컨설팅 후 사후관리 계획 보유 여부
	안전보건 예산 배정 및 시행 여부
	산재예방요율제 사업주 교육,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직무교육 참석 여부
2. 사업장 안전보건수준 (시급성)	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위험성평가 운영 여부
	안전보건관리조직 구성 및 담당자 임명 여부
	현장의 위험공정 및 기계기구의 안전보건 관리상태
3. 사업지원 적정성 (효과성)	현장 개선이 필요한 부분의 사업지원 가능 여부
	안전보건관리체계 시스템과 스마트 안전장비가 유지 가능한 작업환경 여부
	사업지원으로 중대재해 감소 효과성 여부

※ 안전·보건/소방분야 안전수준진단 지원사업장은 현장심사 절차 생략 가능

6	기타 유의사항
---	---------

■ 사업제한 조건

다음의 경우는 선정 대상에서 제외

- 사업 신청시, 유사 사업을 타 기관으로부터 지원받고 있는 경우
- 사전 협의 없이 컨설팅 지원과 관련된 주요 사항을 변경한 경우
- 신청기업에 휴·폐업, 부도, 화의, 법정관리, 신용불량 등의 문제가 발생한 경우
- 기타 판단에 의거 지원 철회 사유가 발생한 경우

■ 제출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음

■ 서류접수 후 내용 확인을 위해 상담 및 추가서류 제출 요청이 진행될 수 있음

[붙임]

1. 안전상생 수준별 지원프로그램 사업수행 세부절차 1부.
2. 재해율 확인서 발급방법(안전보건공단 발급) 1부.
3. 중소기업 확인서 발급방법(중소벤처24 발급) 1부. 끝.

[붙임1] 안전상생 수준별 지원프로그램 사업수행 세부절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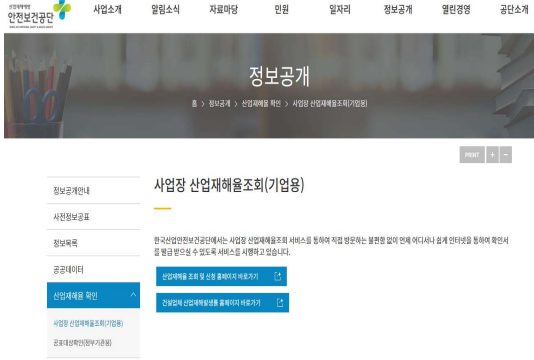
2025년도 안전상생 수준별 지원프로그램 프로세스

프로세스	추진일정	지원사업장 준비사항	재단 지원사항	
사업 공고 및 선정심사	신청 시	홈페이지 신청 컨설팅 선정기업 홈페이지 발표 기업담당자 개별 통보	홈페이지 상시접수 평가위원회 구성하여 서면·현장심사 통한 지원기업 선정	
[1단계] 사전의무교육	매월 마지막주 (1일, 5H)	경영책임자(대표자), 안전실무자 교육 이수	계층별 교육과정 개설 (컨설팅 참여 위한 의무교육)	
[2단계] 위험성평가 실시 지원 2단계 달성 후 3개월 이내 3단계 진행 [3단계]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·이행 지원 ※ 안전실무자 대상 안전보건관리체계 교육 이수 3단계 달성 후 6개월 이내 4단계 진행	2주 내 2회차 방문 ※ 2회차 현장규모에 따라 방문횟수, 연속방문 조정	회차	경영책임자, 안전실무자	전문위원+컨설턴트(합동)
		1 (1일)	-경영책임자 미팅 준비 -안전실무자 지정, 대응시간 확보 -안전보건활동 문서 준비	-경영책임자, 안전실무자 미팅 -유해·위험공정 및 기계기구 파악 -안전보건관리체계 개요 안내 및 문서확인
	1개월 내 3회차 방문	2~3 (2일)	안전실무자, 전 근로자 -현장 공정투어 담당자 준비 -근로자(또는 관리감독자) 교육 준비	전문위원+컨설턴트(합동) -위험성평가 전 공정 현장점검 -위험요인 개선대책 수립·이행 지원 -근로자 대상 위험성평가 기법 교육
		4 (1일)	안전실무자, 관리감독자 -위험요인 개선대책 이행 및 추적관리 -위험성평가 인정신청 여부 결정	전문위원(필요시 컨설턴트) -위험성평가 진행결과 확인점검 -안전장비/디자인 설치 지원 -(위험성평가 인정 신청시) 심사준비 지원
	2주 간격 3회 방문 ※ 조치현황에 따라 방문주기 조정	사후 관리	기본 방문횟수 이상으로 추가지원 필요시 사후관리 지원	
		5 (1일)	경영책임자, 안전실무자 -경영책임자 미팅 준비 -안전보건관리체계 문서 준비	전문위원+컨설턴트(합동) -안전보건조직 구성 및 역할 부여 -안전보건관리체계 문서 확인 -안전보건 매뉴얼·지침서 작성 지원
			6 (1일)	경영책임자, 전 근로자 -안전보건경영방침 선포식 준비 -안전보건 매뉴얼·지침서 작성
		7 (1일)		경영책임자, 안전실무자 -컨설팅 총평 회의 준비 -안전보건 매뉴얼 결재 및 체계 운영
			사후 관리	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·운영시 애로사항에 관한 개선지도 요청 시 사후관리 지원
		2주 간격 3회 방문	8 (1일)	경영책임자, 안전실무자
9 (1일)	-안전보건관리체계 운영 (중저법 대응 이행 모니터링 및 반기평가)		-안전보건관리체계, 위험성평가 운영 현황점검(반기평가)	
10 (1일)	-안전보건활동 효율화 방안 검토		-지원 안전장비 활용실태 점검 -만족도조사 및 우수사업장 선정	
연 1회	사후 심사	4단계 달성시 컨설팅/사후관리 종료(안전일터 인증서 및 현판 수여)		

[붙임2] 재해를 확인서 발급방법

기업 재해를 확인서 발급방법

1.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 통하여 조회시스템 페이지 이동 : [정보공개]-[산업재해를 확인]



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
(<https://www.kosha.or.kr>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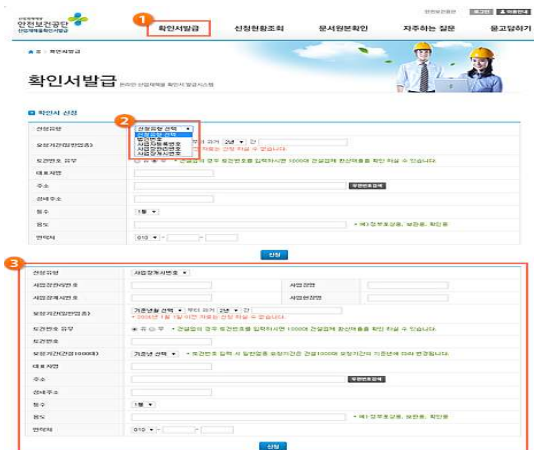
사업장 산업재해를 조회 시스템
(<https://certi.kosha.or.kr>)

2. 조회 시스템 기업 공동인증서 사용하여 로그인





3. 확인서 신청 양식 작성 및 확인서 발급





중소기업(소상공인) 확인서 발급방법

[illegible]